

의안번호	제 178 호
의 결 연 월 일	년 월 일 (제 회)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 출 자	충 청 북 도 지 사
제출연월일	2023년 1월 4일

법무혁신담당관 심사를 마침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안 번호	178
----------	-----

제출연월일 : 2023년 1월 4일
제출자 : 충청북도지사

1. 제안사유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따라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해 소방설비등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2. 주요내용

-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의 범위(안 제4조 및 별표)
- 지원대상 및 비용지원의 근거(안 제5조 및 제6조)
- 지원신청 방법·절차 및 심의결과의 통지(안 제7조)
-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안 제8조)
- 위원의 제척·기피·회피(안 제9조)
- 우선 지원 대상 및 지원 제외 대상(안 제10조)
- 지원의 방법, 비용 정산 및 환수조치(안 제11조~제13조)

3. 의안전문 : 붙임

4. 신·구조문 대비표 : 해당 없음

5. 관계법령 발췌 : 붙임

6. 비용추계서 : 붙임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제3항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설비”란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에 따른 소방시설과 기타설비를 말한다.
2. “안전설비”란 가스차단기, 피난계단 등 화재가 발생한 경우 인명 및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설비를 말한다.

제3조(책무) 충청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1항에 따라 지정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 및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비용의 지원범위) 도지사가 법 제19조제3항에 따라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소방설비 및 안전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범위는 별표와 같다.

제5조(비용의 지원대상) 도지사가 소방설비등의 설치 비용을 지원하는 대상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소방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이

하 같다)으로 한다.

제6조(설치비용 지원) 도지사는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소방설비등 설치(보수·보강을 포함한다)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①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으려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조에서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한다)
2. 토지대장
3.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한다)
4. 건축물 및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5.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경우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의 적절성, 지원의 필요성 등에 대하여 심사하여 지원여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충청북도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1. 지원의 필요성

2. 제5조에 따른 지원 대상의 적절성
3. 제6조에 따른 설치비용의 지원범위
4.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서류의 적합성
- 5 그 밖에 소방설비등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위원장은 소방본부장이 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소방본부 예방안전과장
2. 관할 소방서의 예방안전과장
3. 대학에서 소방안전 관련 학과의 교수로 재직하고 있는 사람
4. 소방기술사 또는 소방시설관리사
5. 그 밖에 도지사가 소방안전 관련 분야에 전문성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議決)한다.

⑥ 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방본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⑦ 위원회는 회의에 부치는 안건이 있을 때에 구성하고, 안건에 대한 심

의가 모두 끝나면 자동으로 해산한다.

제9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 또는 위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사람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해당 안건의 소방설비등 설치비용 지원 대상 소방대상물(이 조에서 “해당 소방대상물”이라 한다)의 관계인이거나 그 관계인과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나. 해당 소방대상물의 설계, 공사, 감리 등을 수행한 경우

다. 해당 소방대상물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3. 위원이 임원 또는 직원으로 재직하고 있거나 최근 3년 내에 재직하였던 기업 등이 해당 소방대상물에 관하여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② 해당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忌避) 신청을 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0조(지원결정) ①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을 지원하려는 소방

대상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선하여 지원할 수 있다.

1. 소방설비등이 설치되지 않아 화재발생 시 인명피해 또는 재산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취약한 사람이 많이 거주하거나 이용하는 경우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지원을 신청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신청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소방기본법」 등 소방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제11조(비용의 지원방법) 제6조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비용 지원은 보조금으로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지원대상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직접 소방설비등을 설치하기 어려운 사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도지사가 해당 소방설비등을 설치하는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비용정산) ① 제7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결정 통보된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설비등 설치가 완료된 경우에는 설치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산서 및 견적서
2.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소방설비등의 설치 완료를 증명하는 서류(사진을 포함한다)

3. 통장 사본

4.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② 제1항의 서류를 접수한 도지사는 소방설비등이 적합하게 설치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설치비용을 지급한다.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소방설비등 설치비용을 지원받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4조제1항에 해당하거나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부터 중복하여 지원금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 경우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기한을 정하여 반환하도록 명해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소방설비등 및 안전설비(제4조 관련)

구분		소방설비등 종류
소방 설비	소화 설비	소화기구, 자동소화장치,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등, 물분무등소화설비, 옥외소화전설비
	경보 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비상경보설비, 자동화재탐지설비, 화재알 림설비, 비상방송설비, 자동화재속보설비, 통합감시시설, 누 전경보기, 가스누설경보기, 시각경보기
	피난구 조설비	피난기구, 인명구조기구, 피난유도선, 유도등, 비상조명등
	소화용 수설비	상수도소화용수설비(소방용수장비 포함), 소화수조, 저수조
	소화활 동설비	제연설비, 연결송수관설비, 연결살수설비, 비상콘센트설비, 무선통신보조설비, 연소방지설비
	기타 설비	비상소화장치, 방재실, 소방시설정보관리시스템
안전 설비	예방 설비	아크차단기, 누전차단기, 가스차단기, 화재감시용카메라
	대응 설비	방수총, 대용량방수포, 포모니터노즐설비, 수막설비(미분무설 비를 포함한다)
	피난방 화설비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방화문을 포함한다), 방화포 또 는 방화천막, 소방관진입창

※ 소방설비등 정의

- 소방설비는 「소방기본법」,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 소방관
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한다.
- 아크·누전·가스차단기는 전기·가스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시설로 전기·가스관
련 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 화재감시용카메라는 화재발생을 감지(자외선, 적외선 등)하여 관계인, 소방관서
등에 통보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수총은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
의 물을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대용량방수포는 대량의 물과 포를 혼합하여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포모니터노즐설비는 배관에 고정된 방수노즐 및 관창을 부착하여 사용하는 것으로, 대용량의 포를 원거리까지 방사할 수 있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수막설비는 건축물 등의 내외부에 설치하여 수동 또는 자동에 의하여 방수된 물의 수막작용에 의하여 화재의 연소확대를 방지하는 시설·설비를 말한다.
- 방화포 또는 방화천막은 화재가 주변으로 확산되는 것을 지연시키는 화재안전성이 있는 천막 등을 말한다.
- 피난계단, 비상구, 방화셔터, 소방관진입창은 「건축법」,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령에 따른 시설·설비를 말한다.

[별지 제1호서식]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신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하고, 바탕색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시	처리일시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장소	대상명	용도
	주소	수용인원
□ 설치 □ 보수 □ 보강	□ 소방설비	□ 소화설비 ()
		□ 경보설비 ()
		□ 피난구조설비 ()
		□ 소화용수설비 ()
		□ 소화활동설비 ()
		□ 기타설비 ()
	□ 안전설비	□ 예방설비 ()
		□ 대응설비 ()
		□ 피난방화설비 ()
신청금액	설치비용(천원)	
	산출근거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소방설비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방설비등의 설치·보수·보강의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충청북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1. 건축물 관리대장(건축물 현황도를 포함함) 및 토지대장 2. 임대차계약서(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의 임차인인 경우에 한함) 3. 건축물 또는 토지 소유자의 설치 동의서(신청인이 소방설비등이 설치되는 건축물 또는 토지의 소유자가 아닌 경우에 한함) 4. 설치비용 산출 근거자료	수수료 없음
------	---	-----------

처리절차



관련법령 발취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8조(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할 수 있다.

1. 시장지역

2. 공장·창고가 밀집한 지역

3.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4. 노후·불량건축물이 밀집한 지역

5. 위험물의 저장 및 처리 시설이 밀집한 지역

6.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이 있는 지역

7.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8. 소방시설·소방용수시설 또는 소방출동로가 없는 지역

9. 그 밖에 제1호부터 제8호까지에 준하는 지역으로서 소방관서장이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도지사가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할 필요가 있는 지역을 화재예방강화지구로 지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소방청장은 해당 시·도지사에게 해당 지역의 화재예방강화지구 지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소방관서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위치·구조 및 설비 등에 대하여 화재안전조사를 하여야 한다.

④ 소방관서장은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를 한 결과 화재의 예방강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인에게 소화기구, 소방용수시설 또는 그 밖에 소방에 필요한 설비(이하 “소방설비등”이라 한다)의 설치(보수, 보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명할 수 있다.

⑤ 소방관서장은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관계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에 필요한 훈련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⑥ 시·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에 따른 화재예방강화지구의 지정 현황, 제3항에 따른 화재안전조사의 결과, 제4항에 따른 소방설비등의 설치 명령 현황, 제5항에 따른 소방훈련 및 교육 현황 등이 포함된 화재예방강화지구에서의 화재예방에 필요한 자료를 매년 작성·관리하여야 한다.

제19조(화재의 예방 등에 대한 지원) ① 소방청장은 제18조제4항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를 명하는 경우 해당 관계인에게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시·도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지원에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소방청장의 요청이 있거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안의 소방대상물의 화재안전성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방설비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소방기본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방대상물”이란 건축물, 차량, 선박(「선박법」 제1조의2제1항에 따른 선박으로서 항구에 매어둔 선박만 해당한다), 선박 건조 구조물, 산림, 그 밖의 인공 구조물 또는 물건을 말한다.
3. “관계인”이란 소방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를 말한다.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22.12.1.)에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
- 구조적 특성상 화재에 취약한 화재예방강화지구내 소방시설등 설치 지원으로 안전관리 강화

2. 비용 발생 요인

- 소방 및 관계인이 화재시 신속 대응할 수 있는 비상소화장치(소방용수시설)를 지원
 - 초기소화 및 소방대에 원활한 소방용수 공급으로 재산피해 최소화

3. 관련조문

- 비용의 지원범위(제4조)
- 비용의 지원대상(제5조)
- 설치비용 지원(제6조)
- 지원결정(제10조)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연 2개소 설치 대상수 당 지원단가로 비상소화장치 설치 지원

나. 추계 결과 : 50,000천원(5차년도 기준)

- 지급대상 : 총 5개소
- 지급금액 : 연 2개소 × 5,000천원 = 10,000천원
- ※ 10,000천원 × 5차년도 = 50,000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도비 100%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소방본부 예방안전과 소방정 김정희(4807)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3년)	2차년도 (2024년)	3차년도 (2025년)	4차년도 (2026년)	5차년도 (2027년)	계
세 입						
세 출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화재예방강화지구 소방설비등 설치 지원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재원 조달	10,000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의존 재원	소 계					
	보조금					
	지방교부세					
자체 수입	소 계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지방세	10,000	10,000	10,000	10,000	50,000
	세외수입					
지방채						
기 금						
특별회계						
△△특별회계						
△△특별회계						
구·군비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